

DMC 슈퍼인턴 2기 인턴 인건비 및 4대보험 지원 안내

DMC 슈퍼인턴 2기 참여기업의 인턴 근로계약 및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참여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기업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한 후 인턴십 종료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1. 인턴십 근로조건

- 인턴기간 : 2026. 12. 1.(화) ~ 2027. 1. 29.(금), 2개월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 5일, 주 40시간 기준
- 임금기준 :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2,121원
- 참여기업은 인턴십 시작 전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인턴십 기간 중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통교육은 유급시간으로 인정하며, 해당 시간에는 기업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.

2. 인턴기업 지원금: 월 2,823,779원 (인턴 인건비 + 4대 보험료 기업 부담분)

1) 인턴 인건비 : 월 2,533,289원(주휴수당 421,326원 포함)

-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2,121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 - 시급 : 12,121원
 - 일급 : 12,121원 × 8시간 = 96,968원
- ※ 1일 8시간, 주 40시간, 월 만근 기준
- ※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실제 금액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.
- ※ 서울시 생활임금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비를 통한 별도 식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※ 본 사업의 인턴 인건비 지원단가는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(시급 12,121원)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지각·조퇴·결근, 중도퇴사 등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조정합니다.

2) 4대 보험료(기업 부담금) : 월 약 290,490원

- 참여기업은 인턴을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, 가입기업에 대해 기업 부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
- 인턴십 전체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된 경우 4대보험료 기업 부담분은 월 약 290,49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기업별 실제 부과·납부한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.
-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- 지각·조퇴 등으로 임금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재직기간에는 포함하며, 4대보험 가입 지원금은 별도로 감액하지 않습니다.

3. 연차유급휴가

- 관계 법령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, 발생한 연차휴가는 인턴십 기간 중 최대 2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참여기업은 인턴의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내역을 월별 출근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- 인턴십 종료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인턴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, 재단은 기업이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.
-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일 96,968원(시급 12,121원 × 8시간)으로 산정합니다.
-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기업이 인턴에게 먼저 지급한 후, 인턴지원금 정산 시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액을 지원합니다.
- ※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하며 임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.
- ※ 중도퇴사 등의 경우 실제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내역에 따라 미사용수당을 정산합니다.

4.1인당 최대 지원금

구분	인턴 임금	4대보험 가입지원금	1인당 기본 지원금
지원금	최대 5,066,578원	최대 580,980원	최대 5,647,558원

- ※ 상기 금액은 인턴이 2026.12.1.~2027.1.31. 전체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최대 지원금입니다.
- ※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상기 기본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, 미사용 연차 발생 시 1일 96,968원을 기준으로 최대 2일분을 별도 추가 지원합니다.
- ※ 실제 지원금은 인턴의 근태, 중도퇴사 여부 및 실제 임금 지급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5.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정산

○ 참여기업이 인턴에게 매월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, 인턴십 종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확인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[제출서류]

1. 인턴지원금 지급 신청 공문
2. 월별 출근부(참여자 확인·서명 포함)
3. 급여명세서
4. 급여이체내역
5.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6. 참여자 4대보험 부과내역서

※ 근로계약서는 인턴십 시작 전 별도 제출

○ 급여명세서를 통해 세전 지급임금을 확인하고,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.

○ 제출자료가 실제 근무내용 및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6. 기타 유의사항

○ 근무시간은 1일 8시간,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○ 연장근로,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불가피하게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등이 발생하여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추가수당은 인턴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기업에서 부담합니다.

○ 기업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휴업수당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○ 인턴의 중도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턴 인건비 등 계산기준 예시

□ 1개월 총 인건비(기업 부담분 보험료 포함) : 2,823,770원

※ 시급 12,121원, 1일 8시간, 주 5일, 월 만근 시 기준
 - 1개월 임금(2,533,280원) + 기업 부담금 보험료(290,490원) = 2,823,770원

□ 1개월 임금(보수월액) : 2,533,280원

① 1일(8시간 근무) 1개월 만근시 임금 : 2,111,963원

- 일급(1일 임금) : 시급 12,121원 × 8시간 = 96,968원
 - 1개월 임금 : 일급 96,968원 × 21.78일 = 2,111,963원

② 주휴수당(1일 임금 × 개근한 주) : 월 평균 421,326원

- 1일 임금(96,968원) × 4.345일(1년 52주÷12개월) = 421,326원

□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: 96,968원

※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중 적치해서 사용하되, 미사용분에 대하여 퇴사 시 정산

□ 보험료 : (사업 참여자) 246,160원 (사용자) 290,490원

보험종류		참여자 부담	사용자 부담	계
계		246,160	290,490	536,650
국 민 연 금		월보수액의 4.75% = 120,331	월보수액의 4.75% = 120,331	
건 강 보 험		월보수액의 3.595% = 91,071	월보수액의 3.595% = 91,071	
장기 요양보험		건보료의 13.14% = 11,966	건보료의 13.14% = 11,966	
고용 보험	실 업 급 여	월 보수액의 0.9% = 22,799	월 보수액의 0.9% = 22,799	
	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	-	월 보수액의 0.85% = 21,533	
산 재 보 험		-	월보수액의 0.9% = 22,799	